

LIG 넥스원(주) 이사회 규정

제정 2007년 4월 1일

개정 2013년 3월 22일

개정 2014년 5월 27일

개정 2015년 3월 5일

개정 2016년 3월 25일

개정 2016년 12월 13일

개정 2019년 2월 28일

개정 2021년 3월 29일

개정 2022년 12월 19일

개정 2024년 03월 25일

LIG 넥스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LIG 넥스원 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 년 일부개정)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015 년 3 월 개정)
-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④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15 년 3 월 추가)
- ⑤ 제 3 조 제 4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15 년 3 월 추가)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2015 년 3 월 개정)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정관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5 년 3 월 개정)

제 6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021.3.29 신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 (2015 년 3 월 개정)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 5 조 2 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5년 3월 추가)

제 9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6.3. 25 개정) (2021.3.29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013년 3월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5년 3월 개정)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부의사항) (2015 년 3 월 개정)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의 보수
- 법정준비금의 감액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이사회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지점, 공장,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및 폐지
-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
- (i) 국내사무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 (ii) 해외사무소의 동일 국가내에서의 이전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당년도 업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 경영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 중간배당의 결정
 -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 주주명부 폐쇄 기간의 결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결손의 처분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 자산재평가
- 중요한 계약의 체결 (2016년 12월 13일 개정)
 - (i)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0%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 계약 및 수출계약의 체결
 - (ii)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 이상의 손실충당금 설정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 중요한 대규모 투자 (200억원 이상)
 - 단 사업계획 승인시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2016년 12월 13일 개정) (2024년 03월 25일 개정)
- 다액의 자금차입(500억원 초과),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200억원 이상) (2019년 2월 28일 개정)
-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 및 처분 (자회사 포함, 100억원 이상), 자산의 처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2016년 3월 25일 개정) (2024년 03월 25일 개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승인
- 이사의 경업 승인

5. 기타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2022년 12월 19일 신설)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 개정)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015년 3월 개정)

제 15 조 (사무국)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장 이사회내 위원회 (2013 년 개정)

제 16 조 (위원회의 설치)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7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2 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 (위원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19 조 (위원회의 결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의 정관개정안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